

표준약관 개정 신·구조문대비표

【예금거래기본약관】

현 행	개 정(안)
<p>제20조(약관 변경) ①상호저축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·적립식 예금약관 및 기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 예금주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(최소 1개월이상)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령 개정, 제도 개선, 약관 변경권고(명령)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. 약관 개정이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 3.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.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<p>②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이 예금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1항의 게시 외에 상호저축은행은 서면·전자우편 등 예금주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(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)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예금주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예금주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20조(약관 변경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변경내용(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, 신·구조대비표 등)을 -----</p> <p>-----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에 대하여 ----- ----- 서면·전자우편 -----</p> <p>----- (제1항 제1호·제2호의 경우 즉시) 개별통지(신·구조대비표 포함) 하여야 하며, 제1항 제3호·제4호 또는 예금주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